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3 ~ 8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3. 9. 27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3. 1. 23자로 개정되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,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사항,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등이 변경·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삭제함(안 제8조 ~ 제10조)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삭제
나.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관련 조문 정비함(안 제13조)

○ 변경등록 사례 추가 :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
다.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

및 「행정절차법」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 규정함(안 제13조의2)

○ 제외 요건 강화 :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(51% ⇒ 55%)

○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 ~ 오전 8시 ⇒ 오전 0시 ~ 오전 10시

○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

⇒ 매월 이틀(원칙은 공휴일, 합의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 가능)

○ 처분 절차 명문화 : 처분의 사전통지 및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3. 8. 28. ~ 9. 16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”을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4항,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”으로 “거창군 지역실정”을 “지역실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2조제3호의2”를 “법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8조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”를 “법 제7조의5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장(제8조부터 제10조까지)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8조에 따른”을 “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)”을 “(등록의 제한 및 조건등의 부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”를 “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의2 중 “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”를 “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마트(대형마트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”로 “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.”를 “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

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”로 “51퍼센트”를 “55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오전 8시까지”를 “오전 10시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”을 “매월 이틀(공휴일 중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, 인근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,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「행정절차법」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군수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「<u>유통산업발전법</u>」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,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거창군 지역실정</u>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준대규모점포”란 <u>법 제2조제3호의2</u>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.</p> <p>4. ~ 7.(생략)</p> <p>제6조(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<u>제8조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</u>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.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3장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</p> 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3033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<u>유통산업발전법</u>」 제8조제4항, 제12조의2 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<u>지역실정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<u>법 제2조제4호</u>----- 4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법 제7조의5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</p> <p><삭 제> 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<u>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, 위생관리, 마케팅,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,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,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7. <u>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</u></p> <p>9. <u>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과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	<p><삭 제></p>
<p>제9조(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협의회는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<u>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</u></p> <p>2. <u>지역 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</u></p> <p>3. <u>지역 내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</u></p>	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</p> <p>5.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</p> <p>6.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7. 그 밖에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</p> <p>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⑦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.</p> <p>⑧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0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군수는 협의회 원활한 업무수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(생략)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)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3조(등록의 제한 및 조건등의 부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변경하거나 매 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----- ----- ----- 1. ~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</p>
<p>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 1. 영업시간 제한: 오전 0시부터 <u>오전 8시까지</u></p>	<p>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마트(대형마트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 -----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----- ----- ----- ----- 55퍼센트 ----- ----- 1. ----- 오전 10시까지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의무휴업일 : <u>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14조(조건등의 부과)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<u>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</u>의 협의를 거쳐 조건, 기한, 철회유보, 부담(이하 “조건등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일 경우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</p>	<p>2. -----<u>매월 이틀(공휴일 중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)</u></p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, 인근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,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「행정절차법」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③ <u>군수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삭 제></p>